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73호 2010. 12. 20.(월)

규 칙	
--------	--

- 규칙 제349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2

고 시	
--------	--

- 고시 제2010-99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고시].....4

공 고	
--------	--

- 공고 제2010-865호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허가 공고].....9
- 공고 제2010-878호 [울산광역시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10

【 안 내 문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 행정정보 → 입립마당 → 북구 공보에서 열람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 문화홍보과 (☎ 219-7207 행정 7207)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12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49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를 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거주자로서 병역을 필한 사람 또는 면제한 사람
7. 그 밖에 북구청장이 정하는 기준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및 해고사항에 대한 미흡부분을 수정·보완함으로써 환경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미화원의 신규채용, 집행예산, 복무규정 등을 감안 광역의 울산시의 전역 거주자 대상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거주자로서 수정 보완(제5조)
- 나. 채용기준의 불필요한 사항 삭제(제5조제1항제4호~제6호)
- 다. 그 밖에 신규채용에 필요한 조건 및 사항을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신설(제5조제1항제7호)
- 라.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및 해고등의 사항은 기관장의 책임과 결정이 수반되는 고유권한사항인 바, 별도 간부공무원의 심의 의결 과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제6조)

고 시 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0.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의회 의결일자 : 2010. 12. 13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 : 붙임 참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0,107,947	4,203,238
일반회계	135,139,632	4,054,189
특별회계	4,968,315	149,049
기타특별회계	4,968,315	149,04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5,069	4,052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3,684,654	110,540
기반시설특별회계	341,600	10,248
주차장특별회계	806,992	24,210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

○ 세 입

(단위 : 천원)

장 · 관 · 항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135,139,632	100.00 %	127,312,521	100.00 %	7,827,111	6.15%
100 지방세수입	36,767,000	27.21 %	25,280,000	19.86 %	11,487,000	45.44%
110 지방세	36,767,000	27.21 %	25,280,000	19.86 %	11,487,000	45.44%
111 보통세	36,587,000	27.07 %	25,152,000	19.76 %	11,435,000	45.46%
113 지난년도수입	180,000	0.13 %	128,000	0.10 %	52,000	40.63%
200 세외수입	18,938,593	14.01 %	19,873,267	15.61 %	△934,674	△4.70%
210 경상적세외수입	9,929,988	7.35 %	10,955,693	8.61 %	△1,025,705	△9.36%
211 재산임대수입	591,744	0.44 %	661,245	0.52 %	△69,501	△10.51%
212 사용료수입	2,249,764	1.66 %	2,195,497	1.72 %	54,267	2.47%
213 수수료수입	2,064,463	1.53 %	1,994,597	1.57 %	69,866	3.50%
214 사업수입	259,400	0.19 %	246,200	0.19 %	13,200	5.36%
215 징수교부금수입	3,962,117	2.93 %	4,756,154	3.74 %	△794,037	△16.69%
216 이자수입	802,500	0.59 %	1,102,000	0.87 %	△299,500	△27.18%
220 임시적세외수입	9,008,605	6.67 %	8,917,574	7.00 %	91,031	1.02%
221 재산매각수입	227,036	0.17 %	53,710	0.04 %	173,326	322.71%
222 잉여금	8,000,000	5.92 %	8,000,000	6.28 %	0	0.00%
227 부담금	226,838	0.17 %	220,976	0.17 %	5,862	2.65%
228 잡수입	459,731	0.34 %	460,995	0.36 %	△1,264	△0.27%
229 지난년도수입	95,000	0.07 %	152,100	0.12 %	△57,100	△37.54%
300 지방교부세	1,284,128	0.95 %	1,282,213	1.01 %	1,915	0.15%
310 지방교부세	1,284,128	0.95 %	1,282,213	1.01 %	1,915	0.15%
311 지방교부세	1,284,128	0.95 %	1,282,213	1.01 %	1,915	0.15%
4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8,927,202	14.01 %	29,787,030	23.40 %	△10,859,828	△36.46%
410 조정교부금	18,118,652	13.41 %	28,978,480	22.76 %	△10,859,828	△37.48%
411 조정교부금	18,118,652	13.41 %	28,978,480	22.76 %	△10,859,828	△37.48%
420 재정보전금	808,550	0.60 %	808,550	0.64 %	0	0.00%
421 재정보전금	808,550	0.60 %	808,550	0.64 %	0	0.00%
500 보조금	59,222,709	43.82 %	51,090,011	40.13 %	8,132,698	15.92%
510 국고보조금등	33,159,306	24.54 %	29,217,963	22.95 %	3,941,343	13.49%
511 국고보조금등	33,159,306	24.54 %	29,217,963	22.95 %	3,941,343	13.49%
520 시,도비보조금등	26,063,403	19.29 %	21,872,048	17.18 %	4,191,355	19.16%

○ 세 출
- 기 능 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구 성 비		구 성 비		증 감 륜
총 계	135,139,632	100.00 %	127,312,521	100.00 %	7,827,111	6.15 %
010 일반공공행정	10,648,812	7.88 %	13,434,068	10.55 %	△2,785,256	△20.73 %
011 입법및선거관리	499,923	0.37 %	602,734	0.47 %	△102,811	△17.06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399,870	0.30 %	293,041	0.23 %	106,829	36.46 %
016 일반행정	9,749,019	7.21 %	12,538,293	9.85 %	△2,789,274	△22.25 %
020 공공질서및안전	446,678	0.33 %	513,959	0.40 %	△67,281	△13.09 %
025 재난방재·민방위	446,678	0.33 %	513,959	0.40 %	△67,281	△13.09 %
050 교육	1,585,615	1.17 %	1,771,406	1.39 %	△185,791	△10.49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301,840	0.96 %	1,506,130	1.18 %	△204,290	△13.56 %
053 평생·직업교육	283,775	0.21 %	265,276	0.21 %	18,499	6.97 %
060 문화및관광	8,680,640	6.42 %	6,885,202	5.41 %	1,795,438	26.08 %
061 문화예술	4,628,456	3.42 %	3,040,569	2.39 %	1,587,887	52.22 %
063 체육	3,794,544	2.81 %	3,746,046	2.94 %	48,498	1.29 %
064 문화재	249,140	0.18 %	86,087	0.07 %	163,053	189.40 %
065 문화및관광일반	8,500	0.01 %	12,500	0.01 %	△4,000	△32.00 %
070 환경보호	3,678,302	2.72 %	3,595,282	2.82 %	83,020	2.31 %
071 상하수도·수질	223,969	0.17 %	174,246	0.14 %	49,723	28.54 %
072 폐기물	3,111,530	2.30 %	3,112,117	2.44 %	△587	△0.02 %
073 대기	35,121	0.03 %	46,556	0.04 %	△11,435	△24.56 %
074 자연	41,395	0.03 %	39,559	0.03 %	1,836	4.64 %
076 환경보호일반	266,287	0.20 %	222,804	0.18 %	43,483	19.52 %
080 사회복지	51,798,193	38.33 %	44,153,507	34.68 %	7,644,686	17.31 %
081 기초생활보장	7,239,369	5.36 %	6,204,388	4.87 %	1,034,981	16.68 %
082 취약계층지원	10,502,799	7.77 %	9,524,894	7.48 %	977,905	10.27 %
084 보육·가족및여성	21,284,879	15.75 %	16,665,972	13.09 %	4,618,907	27.71 %
085 노인·청소년	11,153,236	8.25 %	9,017,323	7.08 %	2,135,913	23.69 %
086 노동	1,617,910	1.20 %	2,740,930	2.15 %	△1,123,020	△40.97 %
090 보건	3,949,566	2.92 %	3,249,124	2.55 %	700,442	21.56 %
091 보건의료	3,895,491	2.88 %	3,175,797	2.49 %	719,694	22.66 %
093 식품의약품안전	54,075	0.04 %	73,327	0.06 %	△19,252	△26.25 %
100 농림해양수산	10,350,063	7.66 %	10,245,036	8.05 %	105,027	1.03 %
101 농업·농촌	4,847,292	3.59 %	4,221,021	3.32 %	626,271	14.84 %
102 임업·산촌	3,715,070	2.75 %	4,267,170	3.35 %	△552,100	△12.94 %
103 해양수산·어촌	1,787,701	1.32 %	1,756,845	1.38 %	30,856	1.76 %
110 산업·중소기업	127,770	0.09 %	140,452	0.11 %	△12,682	△9.03 %
114 산업진흥·고도화	31,510	0.02 %	39,202	0.03 %	△7,692	△19.62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2,380	0.00 %	2,380	0.00 %	0	0.00 %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93,880	0.07 %	98,870	0.08 %	△4,990	△5.05 %
120 수송및교통	4,545,669	3.36 %	4,688,788	3.68 %	△143,119	△3.05 %
121 도로	3,379,657	2.50 %	3,772,914	2.96 %	△393,257	△10.42 %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166,012	0.86 %	915,874	0.72 %	250,138	27.31 %
140 국토및지역개발	4,347,143	3.22 %	3,895,508	3.06 %	451,635	11.59 %
141 수자원	1,428,339	1.06 %	372,189	0.29 %	1,056,150	283.77 %
142 지역및도시	2,918,804	2.16 %	3,523,319	2.77 %	△604,515	△17.16 %
160 예비비	1,962,624	1.45 %	2,849,595	2.24 %	△886,971	△31.13 %
161 예비비	1,962,624	1.45 %	2,849,595	2.24 %	△886,971	△31.13 %
900 기타	33,018,557	24.43 %	31,890,594	25.05 %	1,127,963	3.54 %
901 기타	33,018,557	24.43 %	31,890,594	25.05 %	1,127,963	3.54 %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968,315	100.00 %	4,786,865	181,450	3.79%
200 세외수입	4,741,246	95.43 %	4,564,310	176,936	3.88%
210 경상적세외수입	348,043	7.01 %	224,055	123,988	55.34%
220 임시적세외수입	4,393,203	88.42 %	4,340,255	52,948	1.22%
500 보조금	227,069	4.57 %	222,555	4,514	2.03%
510 국고보조금등	96,919	1.95 %	96,332	587	0.61%
520 시·도비보조금등	130,150	2.62 %	126,223	3,927	3.11%

○ 세 출

- 기 능 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968,315	100.00 %	4,786,865	181,450	3.79 %
070 환경보호	3,684,654	74.16 %	3,556,645	128,009	3.60 %
072 폐기물	3,684,654	74.16 %	3,556,645	128,009	3.60 %
080 사회복지	107,229	2.16 %	103,119	4,110	3.99 %
082 취약계층지원	107,229	2.16 %	103,119	4,110	3.99 %
120 수송및교통	615,121	12.38 %	589,192	25,929	4.40 %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615,121	12.38 %	589,192	25,929	4.40 %
140 국토및지역개발	341,600	6.88 %	332,673	8,927	2.68 %
142 지역및도시	341,600	6.88 %	332,673	8,927	2.68 %
900 기타	219,711	4.42 %	205,236	14,475	7.05 %
901 기타	219,711	4.42 %	205,236	14,475	7.05 %

- 성 질 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968,315	100.00%	4,786,865	181,450	3.79%
100 인건비	294,602	5.93%	278,682	15,920	5.71%
101 인건비	294,602	5.93%	278,682	15,920	5.71%
200 물건비	203,174	4.09%	248,030	△44,856	△18.08%
201 일반운영비	194,044	3.91%	190,180	3,864	2.03%
202 여비	9,130	0.18%	7,850	1,280	16.31%
300 경상이전	82,000	1.65%	85,005	△3,005	△3.54%
301 일반보상금	37,400	0.75%	40,405	△3,005	△7.44%
307 민간이전	44,600	0.90%	44,600	0	0.00%
400 자본지출	338,000	6.80%	270,250	67,750	25.07%
401 시설비및부대비	63,000	1.27%	38,000	25,000	65.79%
402 민간자본이전	5,000	0.10%	7,250	△2,250	△31.03%
405 자산취득비	270,000	5.43%	225,000	45,000	20.00%
500 융자및출자	400	0.01%	400	0	0.00%
501 융자금	400	0.01%	400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4,050,139	81.52%	3,904,498	145,641	3.73%
801 예비비	4,050,139	81.52%	3,904,498	145,641	3.73%

[별지 제11호서식]

공고 제2010-865호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7조제4항(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시행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단		
	대표자	김쌍수	주소	부산 서구 보수로 29
소하천명		돌논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치	매곡동 371-1번지		
	면적	일시: 18㎡	폐천부지예상면적	㎡
	기간	착공일 ~ 7일간		
	목적 및 사유	지반조사(시추조사)		
열람서류 : 설계도서 1부				

21302-11111일

210mm×297mm

95.5.1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울산광역시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위탁운영 대상시설

시 설 명	소재지	시 설 규 모		보육정원	비 고
		대지	건물		
농소리이집	매곡동 795-39번지	997m ²	380.63m ²	86명	24시지정

2. 위탁운영기간 : 2011. 3. 1 ~ 2014. 2. 28(3년간)

3.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 가. 영유아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능력이 있는 보육전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자
-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
-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4. 위탁운영 조건 :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함

5. 신청서류 접수

가. 공고기간 : 2010. 12. 20(월) ~ 2011. 1. 11(화)(23일간)

나. 접수기간 : 2011. 1. 12(수) ~ 2011. 1. 18(화)(7일간)

※ 마감은 사회복지과 사무실 내 18시한 방문자에 한함

다. 설명회 개최

○ 개 최 일 : 2011. 1. 4(화) 14:00, 울산광역시북구청 사회복지과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 설명회 불참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해당단체 및 법인(개인)이 짐

라.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북구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울산광역시북구청 4층)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공휴일 접수 불가, 우편 및 대리 접수 불가)

6. 신청서류

가. 보육시설 위탁 신청서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다.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라.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마.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바.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사.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

아.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

자.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법인 및 단체)

차.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개인)

※ 신청서류는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제본(상철)하여 15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4부)

7. 위탁자 선정기준(배점)

- 운영체의 공신력(10),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운영체의 대표 및 시설장 전문성(30), 보육시설 운영 계획(40), 운영체의 재정능력(10)

8. 위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

가. 결정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함

나. 통 지 : 개별통지

9.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심의당일(추후통보) 울산광역시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10분/프리젠테이션 가능)하여야 하며 질의(10분)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불참시는 신청 의사가 없는 자(포기자)로 간주함.

※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수탁운영 시설장(보육시설 위탁신청서 기재된 시설장)

나.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이 취소됨.

라.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바. 제출서류 중 원본지참 서류의 원본을 신청시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사본서류를 인정하지 않음.

사.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함.

아.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은 무효로 함.

단, 불가피한 사유(사고·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여성아동팀) 052-219-7343,7353 FAX 052-219-7359】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